

의 정 정 보

2005 - 15 8. 9

목 차

I. 개정법령 (지방자치법시행령)	1
II. 입법예고 법령(자치경찰법안)	1
※ 참고 (자치경찰법안 입법예고문 전문)	8

I. 개정 법령

<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시행 '05.8.5)>

-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
시·도의회의원 회기수당을 日 80,000원 → 日 110,000원 으로 인상
- ※ 시·군의원 회기수당 日 70,000원 → 日 100,000원 으로 인상

II. 입법예고 법령

<자치경찰법안>

① 제정취지

- 지방분권특별법('04.1.16, 법률 제7060호)의 지방분권 추진과제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
-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② 주요내용

- 자치경찰대의 신설 및 폐지
 - 자치경찰기구는 주민생활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하며,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
 - 시·군 및 자치구에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되,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신설

및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속 자치경찰공무원(자치총경·자치경정·자치경감·자치경위·자치경사·자치경장·자치순경)은 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서 시장 등이 임용함

- 시·군 및 자치구에 도입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○ 자치경찰대장

- 자치경찰대는 인사요인이 많지 않은 소규모 조직이므로 자치경찰대장의 임용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
- 자치경찰대장은 경력직공무원(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)으로 보하되, 필요시 개방형직위로도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함
- 이를 통해 직무안정성과 조직운영의 활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○ 자치경찰의 사무

-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·지역교통·지역경비사무 및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
-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,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체적인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

○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안협의회

-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분쟁을 조정할 기구가 필요함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심의·의결기구로서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, 협의기구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둠
-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음

○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

- 자치경찰공무원도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이 필요함
- 자치경찰공무원은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상 불심검문,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,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무기를 휴대·사용할 수 있으며, 직무수행 중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인계하고 현행범을 발견한 경우에는 체포하여 즉시 국가경찰에 인도하도록 함
- 자치경찰이 엄정한 법집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

○ 자치경찰공무원의 제복

- 자치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

- 경찰관으로서의 상징성과 통일성을 실현하고, 국민들이 자치경찰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음

○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력

-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호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, 유·무선 통신망과 시설물을 이용하며 경찰력 운용상황·계획을 통보하도록 함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○ 자치경찰 상호간의 분쟁조정

- 자치경찰 상호간의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함
- 시·도를 같이하는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시·도 치안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, 시·도를 달리하는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 소속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
-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○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

-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·통제가 필요함
-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시·도지사는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명령·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시·군·자치구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,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경찰청장의

참여하에 시·군·자치구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

- 자치경찰의 적법성·정치적 중립성에 기여할 것임

○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

- 경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기구가 필요함
-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,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또는 징계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의결을 거치도록 함
-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자치경찰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음

○ 자치경찰의 인사교류

-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제도적장치가 필요함
-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자치경위·자치경정으로 승진하려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경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도록 함
- 인사교류를 통하여 기관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,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

○ 채용시험·교육훈련의 국가경찰 위탁

- 소규모인 자치경찰이 별도의 채용·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경찰의 채용·교육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
-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시험 실시업무를 국가경찰 또는 시·도인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 등은 전문지식·기술 및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에 위탁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
- 시험실시를 국가경찰 등에 위탁함으로써 시험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찰에의 위탁교육훈련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며 국가경찰과의 연계성도 유지할수 있을 것임

○ 시범실시

- 전면실시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함
-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에 앞서 미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, 시범실시시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및 임용방법을 규정함
- 시범실시를 통하여 자치경찰제의 예상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

○ 특별임용에 대한 특례

- 자치경찰대의 최초 설치시 우수한 국가경찰공무원을 유치하여야 함

- 시장 등은 자치경찰대를 창설하는 시·군·구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음
- 우수한 국가경찰공무원을 유치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임

③ 의견제출

- 2005년 8월 24일까지 행자부(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) 제출
- 제출처 : ☎ 02)3703-4506~12 (FAX : 02-3703-5536)

<참 고> : 입법 예고안 전문

법률 제 호

자치경찰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치경찰의 민주적인 관리·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수행의 원칙) 자치경찰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자치경찰(제6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·군 및 자치구에 두는 경찰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제67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제외한다)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이 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중 “직급”은 각각 “계급”으로 본다.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0조·제6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71조제6항·제7항중 “이 법”은 각각 “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”으로 본다.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14조제2항, 제19조제4항, 제30조의4제1항, 제62조제4항, 제65조의2제3항, 제67조의2제2항·제3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“인사위원회”는 각각 “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”로 본다.

제2장 기구와 사무

제4조(자치경찰대의 설치 및 폐지) ①제6조제1항 각호의 사무(이하 “자치경찰사무”라 한다)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·군 및 자치구(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에 당해 시·군·구의 조례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자치경찰대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자치경찰대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치안협의회 의견을 들어 당해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폐지시기는 당해 조례의 공포 후 최소 6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.

④자치경찰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.

⑤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은 자치경찰대가 폐지되는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재배치 등 인력활용 대책을 강구하고, 폐지에 따른 지역치안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